

EC시대 인터넷 도메인명 紛爭 解決 方案에 관한 研究

박 종 삼*
박 영 태**

〈목 차〉

- I. 序論
- II. 도메인명 一般的論 考察
- III. 도메인명 紛爭 動向 및 事例 分析
- IV. 도메인명 紛爭 解決을 위한 方案
- V. 結論

I. 서 론

세계는 인터넷의 확산 및 이용에 따른 새로운 혁명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단순히 기업의 홍보수단이나 정보통신분야 종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뉴스, 홈쇼핑, 온라인교육 등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 천안외국어대학 국제무역과 조교수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

실제 인터넷상에서 이용되는 도메인명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므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업들은 보다 많은 이용자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하다. 그 결과 사용하기를 원하는 도메인명이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할당된 경우 소송을 통해 원하는 도메인명을 찾고자 하는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이제까지 세계 각국은 도메인명 등록 및 분쟁처리에 관한 통일된 정책이 없이 개별 등록소의 정책을 묵인하여 왔으나 이러한 인터넷의 국제적 성격과 그 이용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국제적 정책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국제특별위원회(IAHC)와 미국을 중심으로 도메인명 관리체계의 개선논의가 성숙해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국내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 및 분쟁정책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터넷 도메인명의 구조와 관리체계를 소개한 후 도메인명의 효율적 관리, 분쟁 발생의 억제·해결의 원활화를 위한 사례 분석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을 살펴보고 EC시대 우리나라 인터넷 도메인명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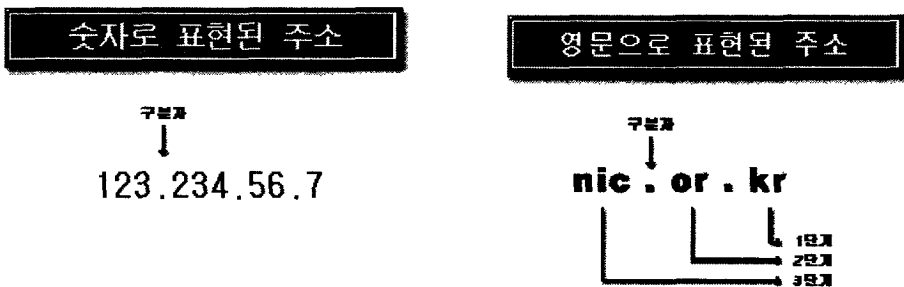
II. 도메인명 一般的論 考察

1. 도메인명의 構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전화가 전화망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의 주소는 숫자로 표현된 주소와 문자열(영문자, 숫자, -)로 표현된 주소 2가지가 있다. 숫자로 표현된 주소는 아래 <그림 II-1> 인터넷 도메인 숫자로 표시된 주소와 같이 점(.)으로 구분되어 4단계로 표시된다.

점(.)으로 구분된 각 숫자는 0-255까지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된 주소를 인터넷 공인 IP(Internet Protocol) 주소라고 한다.²⁾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을 위해서 숫자로 표현된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주소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숫자로 표현된 주소 대신에 문자열로 표현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컴퓨터와 편리하게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생성되었는데, 이를 인터넷 도메인(domain)이라고 한다. 도메인명은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도메인은 <그림 II-1> 인터넷 도메인 영문으로 표시된 주소와 같이 점으로 구분되어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II-1> 인터넷 도메인 住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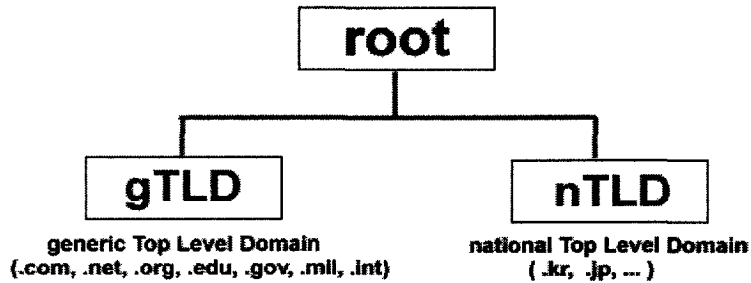
資料 : 韓國電算院, “도메인 이름 紛爭 事例集”, <http://dispute.nic.or.kr/document.html>.

또한,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은 전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하여야 하므로 공통적으로 정해진 체계가 있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생성될 수 없다. 이렇게 인터넷의 모든 도메인은 루트(root)라 불리는 도메인 이하에 역트리

2) 이 住所는 32bit(IP住所는 32bit인데 4個의 숫자로 表示하여 各各의 숫자는 32/4 = 8bit 로써 28 = 256보다 적은 값을 가짐)로 각 호스트(Host란 다른 컴퓨터 혹은 使用者들의 要請을 받아 이를 處理해 줄 수 있는 能力을 갖춘 컴퓨터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며, 外部 使用者가 어떤 서비스를 要求하면 호스트는 이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實行시켜 使用者의 要求에 응하게 된다 ; 現代經濟研究院 編譯, 「電子商去來 革命」, 21세기북스, 1999.1, pp.237-238)마다 固有한 것이며, 한 時點을 基準으로 보면 重複되어 使用될 수 없다.

(inverted tree) 구조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2> 인터넷 도메인 체계



資料：韓國電算院, “도메인 이름紛爭事例集”, <http://dispute.nic.or.kr/document.html>.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터넷 도메인 체계(DNS : Domain Name System)는 <그림 II-1> 영문으로 표시된 주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호스트 컴퓨터들의 주소 정보와 같은 여러 정보를 광범위하고 분산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층 구조 그룹으로 되어 있다. 즉, DNS 형식의 인터넷 주소 처음은 대부분 컴퓨터 혹은 호스트 이름을 나타내고, 나머지 이름은 고유의 계층적 체계로 유지되는 도메인(Domain)과 부도메인(Subdomain)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DNS 형식의 인터넷 주소 마지막 부분은 항상 최상위 도메인(TLD : Top Level Domain)을 나타내는데 이들은 도메인명을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최상위 도메인은 아래의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국가 최상위 도메인(nTLD : national Top-Level Domain)이다. 이 도메인은 ISO3166에 명시된 국가코드³⁾에 의한 국가별 도메인으로서 등록과 관리는 각 국가의 망정보센터(NIC : 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운영하고 있다. 즉, .kr, .us, .jp 등의 국가 코드를 말하며 이는 각 나라에서 2계층 도메인과 3계층 도메인을 부여하여 원하는 도메인명을 지어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r이라는 nTLD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망정보센터(KRNIC)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표 II-1>에 나타나 있듯이 2계층 도메인(SLD : Second Level Domain)을

3) 仔細한 各 國家 코드는 <http://gtld.nca.or.kr/iso3166.html>를 參照.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3단계 도메인인 기관명은 신청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영문 약자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도메인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도메인명(3단계까지) 이하 4단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ISP로부터 부여 받을 수 있다.⁴⁾

<表 II-1> 國內 2階層 도메인 分類

2階層 도메인 分類	使用處
.ac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Academic Institution)
.co	기업 및 상용기관(Company)
.go	중앙정부기관(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re	정부출연연구소(Research Organization)
.or	.go나 .re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기관 단체(Non-profit Organization)
.ne	네트워크 관리(Network Management)
.seoul	지역 도메인(15개)

둘째, .int 등과 같은 국제 최상위 도메인(gTLD : international Top-Level Domain)을 들 수 있는데 nato.int(NATO)와 같은 국제적인 특성을 가진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을 말한다. 이 도메인 등록과 관리업무는 미국의 IANA에서 담당하고 있다.

셋째,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 generic Top-Level Domain)을 들 수 있으며 .com, .net, .org와 같이 전세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을 말한다. 이에 대한 등록 업무는 InterNIC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최상위 도메인에는 .firm, .shop, .web, .arts, .rec, .info, .nom의 7개 최상위 도메인이 추가되어져 있으며, 신규 gTLD 등록업무는 KRNIC을 포함한 새로운 87개 등록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harvard.edu(하버드 대학교)와 whitehouse.gov(백악관)와 같이 미국 내에서만 쓰는 .edu(교육기관), .gov(정부기관), .mil(군사기관) 등의 특별 최상위

4) 文書番號:KRNIC-011, KRNIC 도메인 이름 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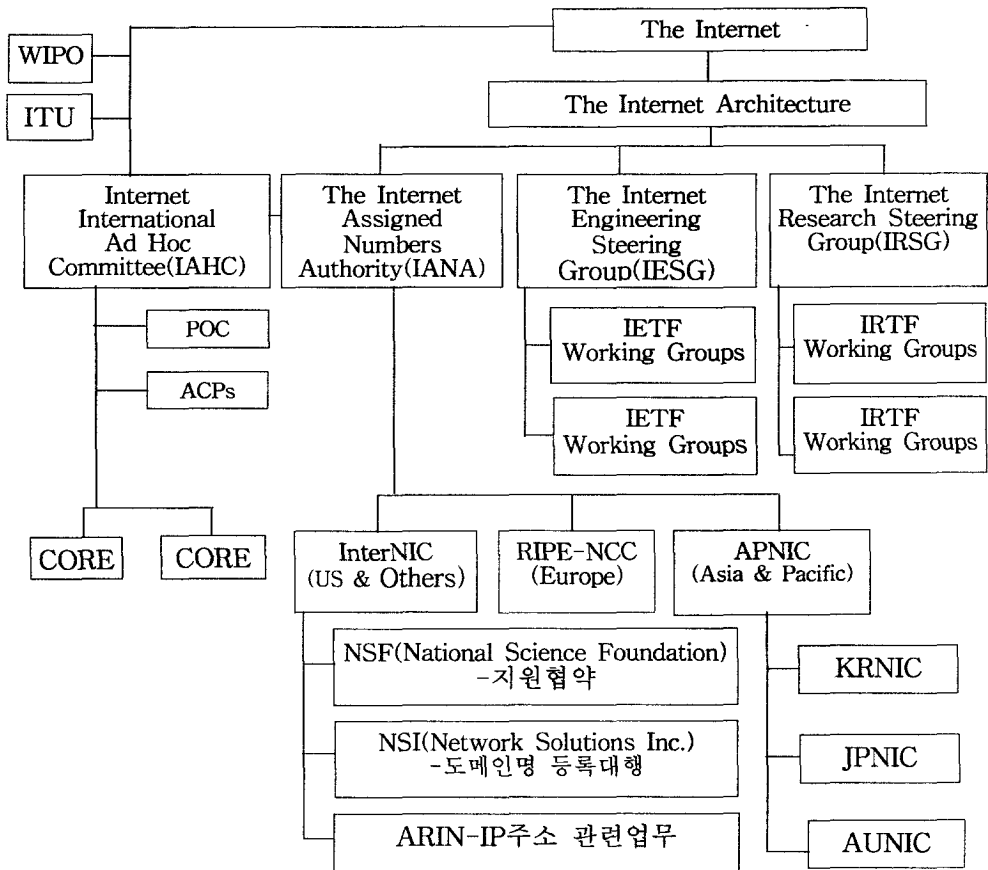
도메인(sTLD : special Top-Level Domain)이 있는데, .edu, .gov 도메인은 미국 InterNIC에서, .mil 도메인은 미국 국방성 망정보센터(DoD NIC : Department of Defense 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등록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도메인명의 管理組織 및 體系

1960년말 미국방성에서 지원한 아르파넷(ARPANET)⁵⁾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의 거대한 데이터 통신망을 관리하고,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表 II-2>에서 볼 수 있듯이 ISOC, IAB를 위시한 인터넷 관리 조직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림 II-3>에 나타나 있듯이 국제 인터넷 조직 체계가 구축되게 되었다.

5) 大部分의 尖端技術이 처음에는 軍事的 目的에서 開發되었듯이 인터넷의 뿌리도 1966年 美國 國防研究計劃局(DPRPA)의 프로젝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國防機關들의 컴퓨터 시스템이 核攻擊으로 마비될 때에 對備해 “아르파넷(ARPANET)”이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通信 네트워크를 構築했던 것이다. 以後 美國의 研究所와 大學들이 아르파넷에 參加해 技術과 研究 通信을 試驗하던 手段으로 使用되었으며, 1973年 英國과 노르웨이가 아르파넷에 接續해 最初로 國外 通信이 이루어졌다. 1982年 인터넷 프로토콜인 TCI/IP가 登場하였고 이때부터 “인터넷(Internet)”은 지금의 이름을 定式으로 얻게 되었다;(每日經濟新聞, 1999年 3月 26日 字, 41面).

<그림 11-3> 國際 인터넷 組織 體系



資料 : 정찬모·장석준, 「인터넷 도메인명의 效率的 管理와 紛爭解決 方案」, 情報通信 政策 ISSUE 第10卷 6號 通卷 100號, 情報通信政策研究院, 1998.5, p.7.

<表 II-2> 도메인명의 管理組織

組 織	役 割
ISOC(Internet Society)	1992년 ISOC가 조직되기 전까지 IAB와 ICCB란 기구에서 관장하던 인터넷의 구조와 프로토콜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여 인터넷을 새롭게 확대 개편하기 위해 구성된 대표적인 인터넷 비영리전문기구이다. ISOC는 IAB, IETF 및 IRTF의 기능을 자체활동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 표준에 관련한 ISOC 뉴스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1년에 2번씩 인터넷 표준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ISOC는 인터넷의 번영을 조장하고 관심을 유지하며 인터넷의 발전과 사용이라는 일반적인 목표를 가진 상대적으로 새로운 전문단체이며, 인터넷의 통일성과 표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맡고 있다.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IAB는 인터넷 구조 발전에 관련된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협력위원회로서, 가입된 위원들은 인터넷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래에 인터넷을 대용량, 고속의 전세계망으로 발전시키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 IAB는 국제적인 기술정책협의 및 인터넷 공동체(Internet community)에 대한 대표로서 행동을 하며 IETF와 IRTF 두개의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 구조, 프로토콜(TCP/IP)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IAB로부터 프로토콜의 변수들에 대해 어떤 값을 부여할 것인지의 관장업무를 위임받은 IANA는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하여 고유한 파라미터를 할당하기 위한 조정기구이며 도메인 할당,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InterNIC	인터넷 도메인명 및 IP주소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제망 정보센터 InterNIC은 AT&T와 제너럴 오토믹스(General Automics Inc.), 네트워크 솔루션즈(NSI : Network Solutions Inc.)간의 협동 프로젝트로 '93년에 설립됐으며, 국가과학재단(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의 협약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초창기에 AT&T는 InterNIC 디렉터리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프로젝트를, NSI는 등록 서비스 프로젝트를, 제너럴 오토믹스는 정보 서비스를 담당했다. 그러나 제너럴 오토믹스의 정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95년 2월 제너럴 오토믹스는 협약에서 빠지게 되었고 이후 NSI는 2계층 도메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com, .org, .gov, .edu, .net 영역 앞에 붙는 2계층 인터넷 도메인명 등록을 NSI가 맡게 되었다. 그리고, InterNIC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IP주소 관련 등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RIN이라는 비영리조직이 구성되었다.
地域網 情報센터	유럽지역의 인터넷 IP주소 할당은 RIPE-NCC가 수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지역은 APNIC가, 북미지역은 InterNIC가 담당하고 있다.
其他 主要機構	IESG(Internet Engineering Steering Group)는 IETF의 활동과 인터넷 표준 등의 기술적인 활동 및 인터넷 표준 등의 기술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망설계자, 운영자, 업체 및 연구자들로 구성된 기구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는 변화하는 망 환경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을 제시하고, 인터넷 표준안을 제정하기 위한 기술위원회로서 여러 개의 영역으로 구성 되어져 있으며, 각 영역은 다시 몇 개의 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표준 및 절차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IRSG(The Internet Research Steering Group)는 IRTF의 활동 및 네트워크 관련 연구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인터넷에 초점을 둔 네트워크 연구자들로 구성된 기구인 IRTF(Internet Research Task Force)는 컴퓨터 통신망에 관한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資料 : 정찬모 · 장석준, 前掲書, pp.7-9.

註 : ISOC⁶⁾/IETF⁷⁾/IANA⁸⁾/NSI⁹⁾

- 6) 이러한 ISOC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ISOC는 1992年 美國의 首都 워싱턴디시에서 形成된 非營利專門組織으로, ISOC의 公開된 目標은 인터넷 이슈에 대한 國際的인 協力과 調整을 強化하는 것이며, ISOC 멤버들은 인터넷의 開發과 革新에 關聯되어 있는 企業體, 政府機關, 財團 그리고 個人등을 들 수 있다. 사실 다른 인터넷 그룹들은 ISOC의 創設以後 ISOC를 總括的인 인터넷 權威體로 인정하고 있다;(황철중, 「綜合情報通信網·超高速情報通信網·인터넷·假想空間, 새로운 法律的 이슈와 規律」, 情報通信政策 ISSUE 第10卷 13號 通卷 107號, 情報通信政策研究院, 1998.12, p.19).
- 7) IETF는 IAB에서 把握된 特定の 이슈들에 焦點을 맞추는 엔지니어들과 다른 技術者들로 構成되어져 있다. IETF는 IETF의 內部管理를 하고 있는 IETF의 理事들과 議長들로 構成된

3. 도메인명 등록 原則

1) InterNIC의 도메인명 등록 原則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각 기업에서는 .com이나 .net 등 일반최상위도메인명을 할당 받으려고 IneterNIC에 도메인 등록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100달러의 등록비와 연간 50달러의 유지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메인명과 상표의 저촉문제는 신청기관의 폭주로 적절한 심사없이 선등록되어 있지 않은 도메인명이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저명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명을 타인이 소유하게 되는 문제점도 낳았다.

기존 InterNIC의 도메인명 등록 원칙은 '선등록자 선처리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이 적용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상표권 침해 행위 금지, 불법적인 도메인명 사용금지, 분쟁시 InterNIC의 책임면책 등의 조항으로 도메인명 분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IESG(Internet Engineering Steering Group)을 가지고 있다. IAB는 IETF 推薦委員會에서 提出된 리스트에서 IESG와 IETF 議長을 任命하며, DARPA로부터 支援을 받고 있다. IETF事務局은 IETF의 行政機構인데, 여러 가지의 인터넷 組織에서 支援을 받고 있으며,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는 IETF 事務局에 一定額의 財政을 支援해주고 있다; (황철중, 上揭書, pp.19-20).

- 8) 실제, IANA는 남캘리포니아大學의 情報科學研究所(the Information Science Institute)의 한 部署이며, 인터넷의 先驅者로 불리우는 존 포스텔(Jon Postel)이 創設以後부터 繼續 이 組織을 指揮해 왔는데, IP 어드레스나 도메인네임 등의 인터넷 파라미터를 割當하고 調整해 온 機構(clearing-house)이다. IANA는 國際탑레벨도메인(International Top-Level Domains : iTLDs)의 新設과 管理를 總括하고 管理하는 權限도 갖고 있다. DARPA(나중에는 NSF)가 IANA의 基本的인 財源調達의 源泉이며 IANA 豫算의 約 90%를 借地하고 있다; (황철중, 上揭書, p.19).
- 9) NSI는 1993년 NSF와의 競爭入札로 協力協定(Cooperative Agreement No. NCR-9218742)을 締結해 그동안 NSF가 맡아왔던 一部 TLD 도메인명의 登錄業務를 관장하게 된 民間企業으로서 同 業務協定은 1999年 3月末에 滿了豫定이었으나 두 번에 걸친 延長措置에 의해 2000年 9月 30日까지 有效하게 되었다. 當初 NSI 運營費用은 NSF가 豫算에서 支援하였으나 1995年 9월부터 利用者가 登錄하는 도메인네임에 대해 費用을 附課하는 形態로 轉換되었다. NSI는 .com, org, net 및 .edu TLD에 대해 IANA가 만든 파라미터들의 範圍內에서 活動하게 되어 있어 다른 NSF 協力協定을 통해 인터넷디렉토리 機能을 遂行하는 NSI, AT&T와 함께 InterNIC이라는 機構를 만들어, 이것으로 하여금 TLD의 登錄業務를 遂行하도록 하고 있다; (황철중, 上揭書, pp.20-21).

그 결과 불순한 의도의 도메인명 선점과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고, 상표권자의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자 1996년 9월 InterNIC은 도메인명 분쟁처리 원칙을 구체화하였는데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상표 등록인이 기존 도메인명 사용자의 도메인명 등록보다 먼저 상표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도메인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도메인명 사용자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법기관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거 도메인명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결과 잃어버린 것으로만 생각했던 상호나 상표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권을 되찾은 경우도 생겼지만, 여태까지 멀쩡하게 사용하던 도메인명을 뺏기게 되는 피해자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도메인명을 내놓아야 하는 쪽에서는 상표권 우선 조항을 1996년 9월 이전의 도메인명 등록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으로 계약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InterNIC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도메인명에 얽힌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¹⁰⁾

한편 InterNIC은 1998년 2월에 도메인명 분쟁 정책 3차 수정안¹¹⁾을 발표시켰는데, 이 3차 수정안에서는 .gov에 관한 업무 종료도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종래 NSI, NSF와 더불어 IANA, IAB, ISOC의 조직에 대해서 도메인 등록자가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NSI, NSF를 제외한 기관에 대한 언급은 삭제하였는바, 이는 실제로 후자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현재 가장 민감한 사안인 상표권과의 저촉 문제에 있어서 이전에는 상표권자가 상표권의 존재 및 손해의 증거를 제출하여 서면 요청하거나 법원이 판정으로 정지, 이전하라고 명령하는 경우에 도메인명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수정안은 “법원의 명령이나 중재 판정이 있는 경우 NSI가 이 도메인명을 폐지, 정지, 이전, 수정할 재량권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명령을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쟁해결 절차의 개시요건 및 절차를 좀더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10) Roadrunner Computer Systems, Inc. v. Network Solutions, Inc.를 爲始한 後術하는 紛爭事例 參照.

11) <http://internic.net/domain-info/nic-rev03.htm>.

2) KRNIC의 도메인명 登錄原則

국내에서는 한국전산원 내의 한국망정보센터(KRNIC)에서 국내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받고 IP주소를 할당, 관리하며 인터넷 관련 주요 정보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KRNIC에서 할당하는 도메인명은 최상위 도메인이 .kr이며 도메인명을 할당받으려면 개인의 경우 자신의 계정이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경유하여 IP주소와 도메인명을 신청하고 할당받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나 단체의 경우는 ISP를 통해 IP주소군¹²⁾을 할당받은 뒤 네임 서버를 위탁 운영할 지 자신이 운영할 지를 결정한 후 KRNIC에 도메인명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내 도메인명 등록조건은 한국내 적을 둔 공식기관이나 단체로서 IP주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 접속을 목적으로 하고 도메인명을 IP주소로 변환하여 주는 서버를 보유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야 한다.

Ⅲ. 도메인명 紛爭 動向 및 事例 分析

1. 도메인명 紛爭 動向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유일하므로 동일한 도메인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간에는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실제 기업 고유의 상호나 이름을 타인이 먼저 등록시에 그것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며 분쟁조정절차상에서 시간적 손실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비용도 부담하여야만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서비스표(상표, 상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의 이름을 타인이 먼저 등록하게 되면, 그 도메인명은 결국 먼저 등록한 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기업 고유의 인터넷상 이름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수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분쟁해결 정책이 차이가 있어, InterNIC은 선등록자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하나 분쟁 당사자간 불만족시 관할 법

12) IP住所群은 254個를 使用할 수 있는 C클래스의 블록 單位를 말한다.

정에 분쟁해결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이러한 인터넷 도메인명 분쟁과 관련 국내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일반최상위도메인(.com 등)은 선접수 선처리, 무제한 발급으로 분쟁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도메인은 상호·상표권 중심의 도메인명 발급으로 분쟁사례는 다소 적은 편이다. 반면, 일반최상위도메인을 등록하고 있는 NSI는 분쟁 처리를 법원의 판결에 맡기고 있으나 도메인명 등록시 그 적법성을 판단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계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개편에 부응하여 WIPO에서는 도메인명 관련 분쟁해결절차를 수립중이며 현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중심으로 도메인명 분쟁조정규칙(WIPO ACP Rules)을 수립 추진중이며 온라인으로 분쟁을 중재·조정할 계획으로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독일·영국의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분쟁사례도 함께 조사 분석토록 하겠다.

2. 紛爭事例

1) 美國의 境遇¹³⁾

(1) 先登錄者 優位の 原則

도메인명에 관련된 최초의 분쟁은 맥도날드사¹⁴⁾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의 인터넷 잡지인 와이어드지 기자가 mecdonalds.com을 등록하고 맥도날드사에게 그 도메인명을 돌려받으려면 초등학교에 컴퓨터 장비를 기부하라는 조건을 잡지상에 공개적으로 게재했던 것이다. InterNIC의 분쟁해결원칙인 '선등록자 우위의 원칙'에 따라 결국 맥도날드가 이에 굴복해 조건대로 컴퓨터를 기부하고 그 도메인명을 찾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은 법정소송까지로 비화하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도메인명 분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¹⁵⁾

13) 정찬모·장석준, 「인터넷 도메인명의 效率的 管理와 紛爭解決 方案」, 情報通信政策 ISSUE 第10卷 6號 通卷 100號, 情報通信政策研究院, 1998.5, pp.16-18과 도메인명 紛爭과 關聯된 인터넷 사이트를 檢索·分析하여 筆者들이 再整理.

14) <http://www.mcdonalds.com>.

(2) 著名商標 稀釋行爲 禁止

일반적으로 상표권침해에 대해서 상표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와 모조상표의 시장이 경쟁관계에 있어야 하고 혼동 혹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각 주에 이어 연방에서도 1996년 연방상표 희석화금지법¹⁶⁾을 제정함으로써 주지상표의 상품차별화 능력을 약화시키는 ‘희석화’ 행위에 대하여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요건이나 혼동의 가능성이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법상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아래의 Hasbro, Inc. v. Internet Entertainment Group 사례가 대표적이다.

<表 III-1> Hasbro, Inc. v. Internet Entertainment Group., Case.17)

도메인명	candyland.com
담당법원	미 워싱턴 서부법원
피 고 측	Brian Cartmell and Internet Entertainment Group
원 고 측	Hasbro, Inc.
배 경	연방상표희석화금지법(trademark anti-dilution statute)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의 경우는 도메인명도 상표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사례.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sbro, Inc.사는 “CANDYLAND”라는 게임을 50년 이상동안 아동용 게임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법원은 연방상표희석화금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라고 판시. - 즉, candyland라는 게임명을 등록하고 있던 원고에게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candyland.com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 - 피고측은 두 회사의 분야가 서로 다르므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상표희석화금지법은 피고의 사용이 실제로 혼동을 일으켰는가를 불문하고 매우 잘 알려진 상표의 경우에는 보호받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현재 사용중인 candyland.com(성인물 웹사이트)의 내용을 삭제하고 도메인명을 원고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판결.
결 과	원고 승소

資料 : <http://dispute.nic.or.kr/document.html>.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CANDYLAND라는 이름, 혹은 candyland.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명이나 Hasbro CANDYLAND마크의 가치를

15) Gary S. Weinstein, “Trademarks and the Internet”, URL <http://www.faegre.com/areas/areaip24.htm>.

16)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 H.R.1295, PL 104-98.

17) Hasbro, Inc. v. Internet Entertainment Group., Case C96-130WD.

회색시키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CANDYLAND 마크와 candyland.com이라는 도메인명 사용을 금지한다고 판결하였는바, 본 사건은 연방 상표회석화금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의 경우에는 도메인명도 상표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3) 商標權 侵害禁止¹⁸⁾

도메인명 반납을 요구한 InterNIC을 상대로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로드런너 컴퓨터 시스템(Roadrunner Computer System) 사건이다.¹⁹⁾ ISP인 로드런너 컴퓨터 시스템은 roadrunner.com이라는 도메인명을 1994년 등록하였으나 1995년 12월 워너브라더스사(Warner Brothers Inc.)가 자사의 등록 상표인 “ROADRUNNER”를 연방 상표 주등록부(principal registrar)에 등록하였다면서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InterNIC에서도 상표권 침해라고 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로드런너컴퓨터 시스템은 미국보다 상표 등록이 간단한 튀니지에서 이틀만에 roadrunner를 상표등록하고²⁰⁾ InterNIC측에 도메인명 존속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로드런너 컴퓨터 시스템은 InterN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도메인명 사용중지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워너브라더스가 로드런너로부터 도메인명을 회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자 InterNIC은 당해 도메인명의 사용중지를 해제하였고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하여 제소를 기각하였다.²¹⁾

(4) 登錄商標 優先主義²²⁾

등록상표 우선주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Data Concepts Inc. v. Digital Consulting Inc. & NSI를 들 수 있다.

18) <http://www.domains.org/roadrunner.htm>.

19) <http://www.rulimburg.nl/~spinoza/news/runner.htm>.

20) 프랑스계 몇몇 國家는 實體的 要件에 대한 審査없이 方式要件만 具備하면 바로 登錄해주는 寄託에 類似한 體制(deposit system)를 採擇하고 있다.

21) Roadrunner Computer Systems, Inc. v. Network Solutions, Inc., Civil Docket No.96-413-A.

22) 이 事件은 先取得된 도메인名이 保護된 事例이다.

<表 III-2> Data Concepts Inc. v. Digital Consulting Inc. & NSI., Case²³⁾

도메인명	dci.com
담당법원	네쉬빌소재 테네시중부법원
피고측	Digital Consulting, Inc.와 NSI
원고측	Data Concepts, Inc.
배경	Data Concepts사가 Data Consulting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Data Consulting사가 원고와 NSI에 대하여 다시 역소송 제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 Concepts사가 Digital Consulting사가 사용중인 “dci.com”이라는 도메인명에 대해 자사의 상표권을 주장하고 NSI사가 피고의 도메인명 사용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 NSI사는 원고와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질 때 까지 DCI.com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소는 취하함. - NSI사는 Data Concepts사에게 도메인명과 관련해서 Digital Consulting사의 이익을 통고. - 피고는 NSI사; 원고와 합의하여 DCI.com을 사용하게 한 것은 계약위반이며 도메인명 등록관리의 책임을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NSI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 - Data Concepts사는 이 도메인이 피고 Digital Consulting사의 상표와 유사하며 이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자 자신들의 상표도 연방정부 특허청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보통법 하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 - 피고의 소비자들과 원고의 소비자들이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을 일으켰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 원고는 자신들의 상표가 미등록된 상표에 비해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NSI와의 합의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 - NSI사와 Data Concepts사는 분쟁기간동안의 dci.com의 사용을 협의하여 허락한 반면 Data Consulting사는 이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함.
결과	피고 승소

資料 : <http://www.zeus.bna.com/e-law/cases/datacon.html>.

본 사건은 무엇보다도 NSI의 도메인명 관리정책이 상표를 ‘등록’한 자를 최우선으로 놓기 때문에 등록 이외의 방법으로 우월한 상표권을 획득한 자를 무시하게 된다는 맹점을 잘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NSI의 도메인명 분쟁해결정책이 보통법상 상표권의 권원인 ‘사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장기간 상표를 사용하여 우월한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그 상표를 사용하였지만 민첩하게 먼저 이를 등록한 사람에게 도메인명을 빼앗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²⁴⁾

23) Data Concepts Inc. v. Digital Consulting Inc. & NSI (M.D.Tenn. May 20, 1997)(Judgment).

24) Salley M Abel and Connie L. Ellerbach, “Trademark Issues in Cyberspace : the Brave New Frontier”, 1997 (Rev 10. 3.), URL:<http://www.fenwick.com/pub/cyber.htm>.

2) 獨逸의 境遇

독일에서도 도메인명 관련 소송이 많이 발생하였다. 만하임법원은 <heidelberg.de> 도메인을 사인에 제공하는 것은 하이델버그시의 우선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쾰른법원은 <kerpen.de>가 커르펜시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²⁵⁾

베를린 법원은 1996년 미국 쾨자스의 인터넷서비스 및 도메인명 중개 회사인 MCN이 <concertconcept.com>, <concertconcept.de>, <concert-concept.com>, <concert-concept.de> 도메인을 이용하는 것은 한 독일 회사의 상호 및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금지명령을 내렸다(1996.11.20, 5 U 659/97, 97 O 193/96). 동 법원은 해당 웹사이트를 법원의 관할지역에서 볼 수 있다면 피고의 호스트 컴퓨터가 미국에 있건 그 도메인명이 미국에서 등록된 것이건 독일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다.²⁶⁾ 나아가 뒤셀도르프 법원은 최상위도메인명이 .com이건 .de이건 독일에서 접속가능하다면 관할성립에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²⁷⁾

3) 英國의 境遇²⁸⁾

영국 컴퓨터 서비스 회사인 Prince PLC는 1995년 NSI로부터 <prince.com> 도메인명을 획득하였다. Prince PLC는 <prince.co.uk> 도메인명도 획득하였다. 미국의 스포츠용품 제작사인 Prince Sports Group은 <prince.co.uk>을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이미 타사에 의해 등록된 것을 알고 한편으로는 <princetennis.com>, <princesportsgroup.com>와 같은 몇몇 도메인을 등록하고 다른 한편으론 <prince.com>을 찾기위해 궁리했다.

PRINCE라는 이름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에서 상표권을 갖고 있던 Prince Sports Group은 Prince PLC에게 <prince.com>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PRINCE를 도메인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Prince PLC는 PRINCE 서비스에 대하여 어디에서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

25) 정찬모·장석준, 前掲書, pp.20-21.

26) 하지만 <www.concertconcept.com> 도메인은 아직도 MCN의 웹사이트로 利用되고 있다.

27) Landgericht Dusseldorf, April 4, 1997, 34 O 191/96.

28) <http://www.towbirds.com/e0020/wflxlgklmayujfrsv17q3flwwd016c8/template/archives/news.18-09-07-10.htm>.

이윽고 Prince Sports Group이 NSI에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도메인 분쟁을 제기하였고 Prince PLC로서는 한달내에 <prince.com> 도메인을 포기하거나, 등록 상표를 제출하거나, 미국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도메인을 이용정지 상태로 빠뜨리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Prince PLC는 29일 만에 오히려 영국의 1994년 상표법 제21조를 근거로 런던 고등법원에 Prince Sports Group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²⁹⁾ Prince PLC는 자신의 <prince.com> 도메인 등록이 Prince Sports Group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Prince Sports Group의 제소위협은 부당하므로 이를 중지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NSI는 Prince PLC가 NSI의 분쟁해결정책상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prince.com> 도메인을 이용정지시키지는 않고 영국 법정의 판단에 맡겼다. 영국에서의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에 Prince Sports Group은 미국 연방법원에 NSI와 Prince PLC를 제소하였다.³⁰⁾

1997년 7월 31일 영국법원은 Prince Sports Group의 제소위협은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Prince PLC의 <prince.com> 도메인명 이용이 Prince Sports Group의 영국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는 선언하지 않았다. 영국법원은 도메인명 소유에 관한 쟁송을 심리하는 경우 Prince Sports Group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 부당한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그 소인에 대한 심리를 회피한다고 설명했다.³¹⁾ 본 사건은 도메인명에 대한 상표권의 주장 위협에 대한 법원의 판시로, 본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³²⁾

4) 우리나라의 境遇³³⁾

1996년 우리나라에서도 도메인명과 관련된 분쟁³⁴⁾이 있었다. 물론 가장 근래의 유명상표를 본떠 도메인 네임(chanel.co.kr)을 등록해 유명상표와 비슷한 제품을 판매했을때의 사례도 있었지만, 본 분쟁에서는 상표권침해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29) Prince PLC v. Prince Sports Group, Inc. CH1997-P2355.

30) Prince Sports Group v. Prince PLC, et al., No.97cv03581.

31) <http://www.ispi.net/files/tehis/scripts/news/newsroom.html>.

32) 정찬모·장석준, 前揭書, pp.19-20.

33) <http://www.bora.dacom.co.kr/~kafil/seminar/4-1.html>.

34) http://www.infoage.co.kr/internetmag/9810/cyber_slum.html.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는 판시가 나오기도 했다.³⁵⁾ <表 III-3>에서는 국가와 도메인명이 모두 틀린 당사자간 도메인분쟁 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表 III-3> 國家와 도메인명이 모두 틀린 當事者間 도메인紛爭 事例

도메인명	nextel.net
담당법원	
당사자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업체 넥스텔
당사자	미국의 이동통신업체 Nextel
배경	국가와 도메인명이 모두 틀린 당사자간 도메인분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이동통신 관련업체인 넥스텔(www.nextel.com)사가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인 넥스텔(www.nextel.net)이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명인 "nextel.net"가 자사의 도메인명을 침해하고 있다고 NSI사에 도메인명 취소를 요청. - 이 사례는 국가가 다르고 도메인명이 다른 경우로서 한국의 넥스텔의 경우 특허청에 이미 서비스마크 출원신청을 마치고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를 기다리던 상태였으며, 특허법에 의하면 출원심사 중인 상표나 서비스표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NSI사는 정식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마크는 NSI 규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 NSI로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후 nextel.net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미국 넥스텔사로 넘긴다는 통지를 받음.
결과	한국 넥스텔측이 uriel.net으로 도메인명을 변경

資料 : <http://dispute.nic.or.kr/document.html>.

35) 무엇보다도 本 事件(chanel.co.kr)의 가장 큰 特徵은 인터넷 住所 登錄의 不文律인 “先接受 先處理(first come, first served)” 原則을 法院이 받아들이지 않고 인터넷 住所에도 商標權이 있다고 認定하는 첫 判決이라는 點이다. 서울地法 民事合議 12部는 1999年 10月 8日 “샤넬” 商號가 들어간 인터넷 住所를 利用해 향수 등을 파는 바람에 商標權을 侵害당했다며 샤넬사가 김모씨를 相對로 낸 商標權 등 侵害禁止 請求訴訟에서 “被告는 샤넬 商號를 인터넷 도메인네임이나 홈페이지에 使用해서는 안된다”며 原告勝訴 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또 “被告側이 韓國인터넷情報센터에 登錄한 ‘chanel.co.kr’라는 도메인네임 登錄도 抹消하라”고 判決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샤넬은 이미 國內外에 널리 알려진 化粧品·패션 商標”라며 “被告側이 이 商標를 인터넷 도메인네임으로 登錄해 使用하면 需要者가 營業主體를 混同하게 될 可能性이 있다”고 判示했다. 裁判部는 또 프랑스에서 直輸入한 香水라며 인터넷을 통한 被告쪽 通信 販賣는 原告쪽 商標 名聲에 便乘해 不當 利得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裁判部는 이어 “被告쪽은 인터넷 도메인네임 登錄은 ‘先接受 先處理’가 原則인 만큼 샤넬쪽의 抹消要求는 不當하다고 主張한다”며 “하지만 이같은 原則은 韓國인터넷情報센터라는 任意團體 指針에 不過한 것으로 商標權侵害禁止를 明示하고 있는 不正競爭防止法을 違反하면서까지 適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샤넬사는 김씨가 “chanel.co.kr”라는 인터넷 住所를 韓國인터넷情報센터에 먼저 登錄한 뒤 “샤넬인터내셔널”이라는 홈페이지를 開設해 콘돔 등 成人用品과 페로몬 香水, 속옷 등을 通信販賣하는 바람에 一般人이 混同을 일으키고 있다며 1999年 5月 訴訟을 提起했었다. 아무튼 本 訴訟은 國內에서 有名會社 이름을 본떠 인터넷 住所를 먼저 登錄한 데 대해 使用權 與否를 놓고 紛爭을 빚었던 첫 事例라는 點에서 示唆하는 바가 크다;(每日經濟新聞, 1999年 10月 9日字, 31面).

본 사건에서 당시 한국 넥스텔측은 상표등록 출원중이었으나 등록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만약 소송에 들어갈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해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 해 11월부터 uriel.net으로 도메인명을 변경하였다.

3. 紛爭事例 示唆點

상기의 미국·독일·영국·한국의 분쟁사례들은 인터넷 도메인명과 관련 있는 지적재산권적 문제와 상표권의 연관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즉, 순전히 인터넷 관리의 기술적 편리성을 위하여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자체계로 고안된 인터넷 도메인명이 법적 보호를 받는 등록상표와 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특히 인터넷 도메인명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두가지로 대별되었는데, 하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표등록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도메인명등록체계 역시 상호연관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상표등록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각국의 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인터넷 도메인명의 등록은 인터넷이라는 전세계적으로 지역적 한계가 없는 사이버 세계에 고유한 것으로 선출원 선등록(first-come, first-serve) 원칙에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간 소송관할에 따라 상표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비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표권을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선등록한 자가 비싼 값에 상표권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cybersquatter)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였다³⁶⁾. 이상의 문제점들은 상기의 분쟁사례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이기도 하다.

이에 도메인명의 분쟁과 관련하여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1997년 2월에는 IAHC가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자가 도메인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서 도메인명 분쟁 및 이의제기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

36) 訴訟을 통한 長期間 商標이미지 損傷보다는 짧은 期間 內에 迅速하게 商標 紛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企業들은 通상 인터넷 도메인명을 사들이는 方法을 選好하고 있다.

하고 관리토록 하였으며, ACP(Administrative domain name Challenge Panels : 도메인명 신청처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도메인명 분쟁을 중재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IV장에서는 인터넷 도메인명 분쟁 해결을 위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을 살펴보고, 분쟁사례들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EC시대 우리나라 인터넷 도메인명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IV. 도메인명 紛爭 解決을 위한 方案

1. 도메인명 紛爭 解決을 위한 WIPO의 動向

171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1998년 12월 23일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에 관한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1998년 7월 논의를 시작한 이래 전문가회의 및 각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다³⁷⁾.

이에 앞서 1998년 6월 미국은 상무부 발표 백서를 통해 인터넷 도메인 관리정책에 관하여 WIPO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 밝히며, 이를 통해 각국의 의사를 반영한 공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WIPO는 첫째, 사이버해적을 비롯한 인터넷 도메인명과 상표권관련 분쟁의 조정 및 해결방안제시 둘째, 최상위도메인명 사용시 유명상표의 보호절차 마련 셋째, 최상위 도메인명으로 추가될 내용결정에 있어서 관련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고서³⁸⁾를 준비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WIPO의 주요 정책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³⁹⁾

37) <http://wipo2.wipo.int/process/eng/register-consult2.html>.

38)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의 最終結果는 인터넷住所管理機構(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ICANN)에 提供될 豫定이다.

39) 권현영,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管理節次 改善 動向”, <http://dispute.nic.or.kr/document.html>.

1) 도메인명 登錄節次의 改善

현실세계의 권리자인 지적재산권자와 사이버세계의 권리자인 도메인명 등록권자의 권리를 상호부합시키기 위하여 WIPO는 도메인명 등록 절차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핵심은 도메인명 등록신청자가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WIPO는 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도메인명등록시 명시적 등록계약(registration agreement)을 통해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① 성명, ② 국적, 우편번호, 지역 및 번지수가 포함된 상세주소, ③ 이메일주소(가능한 경우), ④ 전화번호, ⑤ 팩시밀리번호(가능한 경우), ⑥ 기관의 경우 담당관의 성명 및 연락처, ⑦ 1차 네임서버(호스트명, 넷주소), ⑧ 2차 네임서버(호스트명, 넷주소). 둘째, 도메인명등록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① 등록신청자는 해당도메인명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진실되며 정확함을 확인한다는 내용. ② 해당정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기본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인불가능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등록기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④ 분쟁의 경우 특정법원으로 관할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체분쟁해결수단(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해 해결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셋째, 도메인네임은 등록료를 지불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기간만료이전에 재등록을 하여야만 계속 유효하도록 하고 있고, 만일 기한내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넷째, 상표권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이에 대한 사전검색을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상표권 사전검색을 등록조건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등록도메인명에 대한 검색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고 있는바, 이상의 내용들은 WIPO가 도메인명 등록절차의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다.

2) 紛爭解決節次의 改善

국가간 소송관할 및 등록기관의 분쟁해결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인터넷 도메인명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WIPO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송이다. ① (소송 당사자 적격)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시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 (소송 관할) 도메인명과 관련한 소송관할은 등록계약에 따라 등록신청자의 주소지 국가의 관할법원과 등록기관 소재지 국가의 관할 법원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국가는 파리협정⁴⁰⁾이나 TRIPS협약⁴¹⁾의 조약국이어야 한다.

둘째, 조정(arbitration)이다. 등록계약에서 규정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도메인명 관련 조정(arbitration)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조정절차는 등록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온라인(on-line)을 통하여서 할 수 있다.

셋째, 등록기관에 의한 직권분쟁해결절차(Uniform dispute-resolution procedure)인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등록기관에 의한 직권분쟁해결절차는 DNS에 한하여 적용되며, ICANN⁴²⁾으로부터 적법한 계약을 통해 등록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등록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분쟁해결 위임조항) 등록계약에는 등록신청자가 직권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도메인명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확대적용) 직권분쟁해결 위임조항은 도메인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관련 분쟁의 해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④ (적용범위) 직권분쟁해결절차에 의한 권리구제는 도메인등록의 정지(suspension), 취소(cancellation), 제3자에 의한 변경(transfer), 분쟁해결비용의 분배에 한한다. ⑤ (효력범위) 직권분쟁해결절차는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직권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은 직권분쟁해결절차에 의한 결정에 우선한다. ⑥ (절차규정) 직권분쟁해결절차신청에 대한 기각여부결정은 절차개시 일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최종결정은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심판부의 구성) 직권분쟁해결절차의 심판부는 단독 심판부(a single decision-maker)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부(three decision-makers)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직권분쟁해결절차에서 등록기관은 직권분쟁해결정책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며 등록계약에는 분쟁개시절차 및 결정에 대한 승복규정을 넣고 직권분쟁해결절차에서의 결정은 web-site를 통해 공개토록 한다고 기술되어져 있다.⁴³⁾

40)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the Paris Convention).

41) the Agreement on the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the TRIPS Agreement).

42) ICANN은 非營利 公益機構로서 인터넷 도메인명과 IP住所 등 인터넷 住所管理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3) 主知 著名商標(famous and well-known marks)의 公開 最上位 도메인명(open Top Level Domain Name⁴⁴⁾) 使用排除

WIPO는 저명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악의적 최상위도메인명 등록을 방지하고 주지 저명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⁴⁵⁾.

첫째, ICANN은 주지 저명상표에 대한 공개 최상위 도메인명 사용배제 등록 체계를 별도로 수립하고 등록기관은 적법계약에 따라 이 절차를 적용토록 한다. 둘째, 공개 최상위 도메인명 사용배제 등록신청 및 결정사항을 대표웹사이트(centralized web site)를 통하여 공개토록 한다. 셋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심판관(well-qualified decision-makers)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전문가중에서 3인의 특별심판관(ad hoc panels)을 임명토록 한다. 넷째, 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참여를 인정토록 한다. 다섯째, 심판관임명에는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앙집권적으로 절차를 진행토록 한다. 여섯째, 주지 저명상표에 대한 도메인명 사용배제 등록에 관한 등록기관의 결정은 해당국의 산업재산권관련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토록 한다.⁴⁶⁾

따라서, WIPO에서는 도메인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도메인명 등록절차의 개선 둘째, 분쟁해결절차의 개선 셋째, 주지저명상표의 공개 최상위 도메인명 사용배제를 제시하고 있다.

2. 도메인명 紛爭 解決을 위한 方案

사실 NSI의 도메인 분쟁해결정책은 선사용보다는 선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이외의 많은 나라의 상표법과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상표법상 선등록주의가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수행한 자의 이익을 보

43) 권현영,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管理節次 改善 動向”, <http://dispute.nic.or.kr/document.html>.

44) 一般最上位 도메인명은 genera top level domain으로 表現되어 *.com으로 代表되는 데 비해 open TLD는 Top Level로서 예를 들면 *.co.kr도 包含하는 概念으로 理解된다.

45)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으로 表現되는 도메인명 無斷占有는 주로 著名商標를 標的로 이루어지고 있다.

46) 권현영,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管理節次 改善 動向”, <http://dispute.nic.or.kr/document.html>.

호한다는 논리는 마찬가지로 도메인명을 먼저 얻으려는 노력을 수행한 자의 이익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실제 도메인명 분쟁해결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리중의 하나는 선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도메인명 선등록자우위의 원칙이 선등록상표 우선정책에 의해서 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분쟁 소지를 안고 있는 도메인명 관리 규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종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물리적 영토공간에서 인정받던 상표권을 사이버공간까지 연장시키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상표권자의 권리와 사이버공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네티즌의 선택의 자유, 극대화간의 조화를 항상 배려해야 한다.

또한 상표권은 해당 등록국가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며,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타인이 먼저 도메인명을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등록상표 도용의 고의를 업종의 동일성 등에서 추정되는 것으로 하여 도메인명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업종·지역 양자 모두에 있어 상이한 분야에서 우연히 동일 명칭을 도메인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메인명 사용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명상표 희석화이론을 수용하는 범위도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칫 외국 상표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사이버공간에 확대하여 인정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지금까지의 인터넷 도메인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은 크게 다음의 두가지 때문이라 할 수 있었다. 첫째는 사법제도의 한계 때문이었다. 즉,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늘어나면서 도메인명과 관련하여 개인간, 업체간, 개인과 사업자간에 많은 분쟁이 예상되었으나 이러한 분쟁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한 전통적인 사법제도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분쟁해결제도를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대안은 사법제도에 의한 분쟁해결시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해결의 적시성(timeliness) 및 전문성 제고를 기하며, 일반의 인지도를 높여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 주리라 판단된다.

둘째는 국제적 조화의 필요성 때문이다. 즉,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은 국제적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의 분쟁해결절차 및 제도가 국제적 차원의 절차와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구체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국제적 분쟁해결절차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분쟁해결절차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메인명과 관련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이 필요한데, 이는 기존의 사법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라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분쟁해결기구 설립방안으로서는 ① 독립기구 설치 방안,⁴⁷⁾ ②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안,⁴⁸⁾ ③ KRNIC에 분쟁처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⁴⁹⁾ ④ 대한상사중재원에 회부하는 방안⁵⁰⁾ 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상기의 방안들의 장단점은 각주 47)번에서 50)번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전문가로 분쟁해결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각 대안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분쟁해결절차의 수립이 필요하다. 즉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해결기구 선정과 함께 상담, 조사, 중개, 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인터넷 도메인명 분쟁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기존의 사법제도 및 국제적 분쟁해결절차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7) 도메인네임 關聯 이슈의 特殊性 등으로 보아 獨立的 機構를 設置하는 方法이 窮極的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機構 新設에 따르는 財政的 負擔, 利用者들의 紛爭解決費用의 增加 등의 現實的인 負擔이 發生할 短點이 있다.

48) 도메인네임 關聯 紛爭 中 많은 部分이 商號 및 商標와 의 問題 등 既存의 知的財産權制度와 關聯된 境遇가 많다는 點에서 紛爭處理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産業財産權 紛爭調停 委員會가 도메인네임의 效率的 利用보다는 商標權 保護的 立場에서 도메인네임 問題를 解決하려 할 憂慮가 있다는 短點이 있다.

49) 인터넷 도메인명에 관한 專門性을 기할 수 있고 도메인명의 登錄 및 割當과 機能的 連繫를 할 수 있다. 그러나 部署 新設에 따르는 財政的 負擔과 運營上 業務量의 加重 등 KRNIC의 負擔 뿐 아니라 登錄 및 割當 機能과 紛爭解決機能이 同一機構에 重疊되는 問題가 發生할 所持가 있다.

50) 現在 大韓商事仲裁院은 商事 紛爭에 관한 仲裁, 相談, 斡旋業務를 遂行하고 있어 紛爭解決機構設立 節次가 容易하다. 또한 大韓商事仲裁院은 인터넷 도메인네임 關聯 이슈 및 商標法 등에 대한 專門性을 갖춘 多數의 仲裁人이 包含되어 있어 이점 역시 長點이라 할 수 있다.

V. 結 論

인터넷 이용의 급증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명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상표권 등과 관련한 도메인분쟁도 증가추세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도메인명으로 거래기업을 찾게 되므로 도메인 네임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도메인명과 관련된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까지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명확한 분쟁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 분쟁 당사자간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도메인명 분쟁 조정규칙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제적 동향에 대응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들은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우리나라 인터넷 도메인명 분쟁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사법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이어야 하며, 분쟁해결기구 설립방안으로서는 첫째, 독립기구 설치 방안 둘째,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를 이용하는 방안 셋째, KRNIC에 분쟁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넷째, 대한상사중재원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있다. 물론, 상기의 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전문가로 분쟁해결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각 대안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필자들은 첫번째 내지는 넷번째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분쟁해결절차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 선정과 함께 상담, 조사, 중개, 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인터넷 도메인명 분쟁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의 사법제도 및 국제적 분쟁

해결절차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도메인명에 관한 분쟁은 국제적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의 분쟁해결절차 및 제도가 국제적인 절차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구체적인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부에서도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 분쟁해결절차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분쟁해결절차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et Domain's Name Dispute Sdution Methods at EC times

Jong Sam Park
Young Tae Park

The world of today faces a radical change, a new revolution, by the spread of the Internet. It is used not only for advertising but also for the exclusive righ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add to the way of developing everyday our lives with world news, home-shopping, on-line education and so on.

Actually, since the Internet Domain's Name(IDN) is unique over the world, the individual and the companies which provid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have a keen competition to make a good IDN to memorize and organize all available information provided them. As a result,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the cases where one company files suit against another for the validity of it's IDN so the policy to arbitrate and solute the cases is required.

This paper is going to introduce the structure and the system of management for IDN. It will also discuss the efficient management of IDN, various case analysis of the dispute restraint and solutions, and the movement of improving the management procedure of IDN in WIPO. So we suggest to examine common disputes among IDN uses and solution methods for future problem at EC times.

Therefore we have to establish the dispute solution system. Here are the two methods : one is that to establish a dispute solution organization. This organization which can conduct the new dispute solution procedure differs from the existing legislation system.

The other is that to establish a dispute solution procedure i.e. the various dispute solution procedure for efficient dispute solution : council, inspec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This procedure is conducted on-line due to features of the IDN disputes, also along with the current legislation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dispute solution procedure. Because there is possibility the IDN disputes usually are connected with other countries. As there is no specific disputes solution procedure so far, we have to wait while development occurs that also striving to be coherent with and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lution procedure by helping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dispute solution procedure.

참 고 문 헌

- 권헌영,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管理節次 改善 動向”,
<http://dispute.nic.or.kr/document.html>.
- 國內 도메인 割當 原則 改善(案), 韓國電算院 情報連繫센터 情報서비스팀, 1997.
- 김원오, 「商標保護의 國際的 規範體系와 그 動向에 관한 研究」, 高麗大 博士學位
論文, 1997.12.
- 每日經濟新聞, 1999年 10月 9日字.
- 방석호, “假想空間과 法學의 課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創立記念 세미나 發
表論文」, <http://midas.hanyang.ac.kr/cybercom/bsh1.html>.
- 月刊 인터넷, 1996.11月號.
- 인터넷(NIC) 動向 및 技術에 관한 研究, 韓國電算院, 1997(URL:<http://www.nic.or.kr/data/taegu/Final/index.html>).
- 情報通信部, 「世界 인터넷住所 組織의 改編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터넷住所 政策
方向大討論會」, 1998.12.
- 정진섭, “假想空間에서 左衝右突하는 現實世界的 法,” 「인터넷(Internet) 特輯1」,
1996. 11.
- 정찬모·장석준, 「인터넷 도메인명의 效率的 管理와 紛爭解決 方案」, 情報通信政
策 ISSUE 第10卷 6號 通卷 100號, 情報通信政策研究院, 1998. 5.
- 中央日報, 1999年 1月 14日字.
- 現代經濟研究院 編譯, 「電子商去來 革命」, 21세기북스, 1999. 1.
- 韓國 인터넷情報센터 主要 業務 計劃(案), 韓國電算院 情報連繫센터, 1997.
- 韓國 인터넷情報센터 워크샵자료, 韓國인터넷情報센터, 1997.
- 韓國電算院, “도메인 이름 紛爭 事例集”, <http://dispute.nic.or.kr/document.html>.
- 홍준형·이종원·권해수, “인터넷 運營體制(Internet Governance)와 도메인이름
(DNS),” 「1998年度 韓國行政學會 秋季國際學術大會: 未來電子政府 비전
定立 및 具現을 위한 國際심포지움 發表資料」, 1998. 10.
- 황철중, 「綜合情報通信網·超高速情報通信網·인터넷·假想空間, 새로운 法律的
이슈와 規律」, 情報通信政策 ISSUE 第10卷 13號 通卷 107號, 情報通信
政策研究院, 1998. 12.

- KRNIC-011, KRNIC 도메인 이름 體系.
- American Network, Inc. v. Access America, 1997 WLL 466507(S.D.N.Y.August 14, 1997).
- Data Concepts Inc. v. Digital Consulting Inc. & NSI(M.D.Tenn. May 20, 1997)(Judgment).
- David Flint, "Internet Domain Names-proposal for a cybermark", 「Computer Law & Security Report」, Vol.13, No.3, 1997, Elsevier Science Ltd.
- David J. Loundy, "A Primer on Trademark Law and Internet Addresses", (URL:<http://www.loundy.com/JMLS-Trademark.htm>).
-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 H.R.1295, PL 104-98.
- Gary S.Weinstein, "Trademarks and the Inetnet"(URL:<http://www.faege.com/areas/areaip24.htm>).
- Harrods Limited v. UK Network Services Limited, et al., 1996 H 5453.
- Hasbro, Inc. v. Internet Entertainment Group., Case C96-130WD.
- Landgericht Dusseldorf, April 4, 1997, 34 O 191/96.
- Maritz, Inc. v. Cybergold, Inc., 947 F.Supp.1328(1996).
- Price PLC v. Prince Sports Group, Inc. CH1997-P2355.
- Prince Sports Group v. Prince PLC, et al, No.97cv03581.
- PTC v. Nominet UK(Royal Court of Justice, 1996).
- Resuscitation Technologies, Inc. v. Continental Health Care Corp., 1997 U.S.Dist. LEXIS 3523 (S.D.Ind. 1997).
- Roadrunner Computer Systems, Inc. v. Network Solutions, Inc., Civil Docket No.96-413-A.
- Robyn Durie, "Internet Law-The Internet, Trademarks and Domain Names", 「Computer Law & Security Report」, Vol.13, No.1, 1997, Elsevier Science Ltd.
- Salley M Abel and Connie L. Ellerbach, "Trademark Issues in Cyberspace : the Brave New Frontier", 1997 (Rev10.3) URL:<http://www.fenwick.com/pub/cyber.htm>.
- Substantive guidelines concerning administrative domain name challenge panels

[third revised draft], Jan.16, 1998.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Generic Top Level Domain Name Space of the Internet Domain Name System(gTLD_MoU) (URL:<http://www3.itu.int/net-itu/gtld-mou/gTLD-MoU.htm>).

WIPO, “The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terim Report of the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 (<http://wipo.wipo.int>, Dec.23. 1998).

Zippo Manufacturing Co. v. Zippo Dot Com, Inc., 952 F.Supp.1119(1997).

_ <ftp://ftp.isi.edu/in-notes/rfc2014.txt>.

- <http://gtld.nca.or.kr/iso3166.html>.

- <http://internic.net/domain-info/nic-rev03.htm>.

- <http://internic.net/help/policy.html>.

- <http://www.bora.dacom.co.kr/~kafil/seminar/4-1.html>.

- <http://www.domains.org/roadrunner.htm>.

- <http://www.mecdonalds.com>.

- <http://www.arin.net/intro.htm>.

- http://www.infoage.co.kr/internetmag/9810/cyber_slum.html.

- <http://www.irtf.org>.

- <http://www.ispi.net/files/texis/scripts/news/newsroom.html>.

- <http://www.nic.or.kr/net/>

- <http://www.ntia.doc.gov/ntiahome/domainname/022098fedreg.htm>.

- <http://www.oecd.org/dsti/sti/it/cm/prod/e-97-207.pdf>.

- <http://www.rulimburg.nl/~spinoza/news/runner.htm>.

- <http://www.towbirds.com/e0020/wflxlgklmayujfrsv17q3flwwd016c8/template/archives/news.18-09-07-10.htm>.

- <http://www.wipo.org/eng/internet/domains/index.htm>.

- <http://wipo2.wipo.int/prosess/eng/background.htm>.

- <http://wipo2.wipo.int/prosess/eng/consult2.htm>.

- <http://wipo2.wipo.int/prosess/eng/timetable.htm>.